

[일련번호: 1]

경기도체육회

기관경고

[제 목]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소 속 기 관] 화성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화성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¹⁾, 제36조(예산의 편성)²⁾ 및 「화성시체육회 정관」 제12조(총회의 기능), 제18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제41조(재원),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과 「화성시체육회 회계규정」 제9조(예산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 등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체육회 사업발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 지원시책을 충실하게 구현해야 하고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집행 업무를 하고 한해 지출한 예산을 총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회계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정관」 제12조(총회의 기능),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에 따라 사업결과 및 결산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 받도록 되어 있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정기종합감사 중(*.**~*.***) 체육회의 ****년도부터 ****년도 까지 *개년의 세입·세출을 검토한 결과 시비, (시)체육진흥기금, 자체비는 이사회를 통해 의결을 거쳐 편성 및 집행 관리가 이루어졌지만,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를 통해 받은 국비 및 도비는 예산편성 및 결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조치사항] 화성시체육회장은

****년도 국·도비 예산편성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고 ****년도 국·도비 결산을 심의·의결하여 *월 *일까지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예산편성 없이 보조금 집행관리가 되지 않도록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보조금관리 및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부적정한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계약 관련 회계 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화성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화성시체육회는 「화성시체육회 정관」과 「화성시체육회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업무 및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화성시체육회는 국비 및 도비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년 부터 ****년까지 ○○○ ○○○○○○ 사업과 ○○○○○○○○ ○○○○ 사업 등에서 다수의 물품 구매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회계규정」제31조¹⁾에서 계약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제14조제1항²⁾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1항³⁾에

1) 「화성시체육회 회계규정」 제31조(계약방법과 준용)

물권계약, 채권계약, 신분계약 등 기타 계약 행위는 다음의 해당 법령을 준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따르면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8조4)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갖춰야 할 제반 서류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5조제3항5)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물품 구입 승낙사항을 갖추도록 규정하였고, 신용카드나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화성시체육회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필요 제반 서류를 갖춰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정기종합감사 기간 중(*.**~*.**) 화성시체육회의 국·도비 지출 현황을 분석 한 결과 대부분의 지출을 카드결제로 진행하였고 지출결의서가 구비되어 200만원 이하의 거래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구입금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의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필요 제반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계약의 체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 제40의1호서식, 제41호서식 또는 제41의1호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훈령 별표 5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표] 계약 체결 미이행 리스트

사업연도	사업명	거래일	거래처	사용목적	금액(원)
****	○○○ ○○○○○○	**.*.*.*.	○○○○○○○	운동용품	*,***,***
****	○○○ ○○○○○○	**.*.*.*.	○○○○○ ○○○○○○	방역물품	*,***,***
****	○○○ ○○○○○○	**.*.*.*.	○○○○○○○	운동용품	*,***,***
****	○○○ ○○○○○○	**.*.*.*.	○○○○○○○○○○○	방역물품	*,***,***
****	○○○○○○○ ○○○○	**.*.*.*.	○○○○○○○	운동용품	*,***,***
****	○○○○○○○ ○○○○	**.*.*.*.	○○○○○○○	지도용품	*,***,***
****	○○○○○○○ ○○○○	**.*.*.*.	○○○○○	방역물품	*,***,***
****	○○○○○○○ ○○○○	**.*.*.*.	○○○○○○○	운동용품	*,***,***
****	○○○ ○○○○○○○○	**.*.*.*.	○○○○○○○	운동용품	*,***,***
****	○○○○○○○	**.*.*.*.	○○○○○○○	운동용품	*,***,***

[조치사항] 화성시체육회장은

「회계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서 계약 관련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후조치 해주시기 바라며, 체육회 회계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공석) 미채용
[소 속 기 관] 화성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화성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정관」 제2조에 따라 화성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국비 50%, 지방비 50%(경기도 25%, 화성시 25%)를 투입하여 총 14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화성시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지방체육회)¹⁾ 및 「정관」 제2조(목적)에 따라 운영하고 체육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며,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배정인원과 예산을 근거로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총 ***명을 배치하고 화성시에 **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 할 수 있도록 배정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하지만 체육회는 **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자 퇴사한 ○○○ 지도자를 시작으로 ****년 *월 **일자 퇴사한 ○○○ 지도자까지 *명의 지도자가 퇴사하였으나 충원하지 않고 결원인 상태로 현재까지 *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 치 사 항] 화성시체육회장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배정된 인원 **명을 운영될 수 있도록 화성시청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반기 (2023년 6월) 이내로 결원이 발생한 *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고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